

○○보호관찰소 (전화번호)									
수 신 ○○공소청					발 신 ○○ 보호관찰소장(인)				
제 목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									
「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.									
사회봉사 대상자	성 명					징제번호			
	주민등록번호								
	주 소								
원 래 의 결정내용	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						확정된 벌금액		
	사 회 봉 사 허 가 일				사회봉사시간			집행 기간 만료예정일	
- 취소 사유 -									
☐ 사회봉사 허가를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음. ☐ 사회봉사 집행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음. 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(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지시에 따를 의무, 주거 이전 및 해외여행 시 신고의무)을 위반함. ☐ 구금 등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음. ※ 집행 상황 요지 등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첨부 담 당 보 호 관 찰 관 (인)									
○ ○ 공 소 청									
수 신 ○○법원									
제 목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청구									
위와 같이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.									
년 월 일 ○ ○ 공소청 검사 (인)									
기각 사유			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 g / m²(재활용품)]